연구보고 2013-17

2013 재정법제연구사업(X)

김 지 훈 · 최 유 · 김 지 영
홍 종 현 · 김 영 미 · 미즈시마 레오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연구보고 2013-17

2013 재정법제연구사업 (X)

김 지 훈·최 유·김 지 영·
홍 종 현·김 영 미·미즈시마 레오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2013 재정법제연구사업 (X)

A Study on Financial Legislation Research (X)

연구자 : 김지훈(부연구위원)
Kim, Ji-Hoon
최 유(부연구위원)
Choi, You
김지영(부연구위원)
Kim, Ji-Young
홍종현(초청연구원)
Hong, Jong-Hyun
김영미(초청연구원)
Kim, Young-Mi
미즈시마 레오(초청연구원)
Leo Mizushima

2013. 12. 9.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요 약 문

Ⅰ. 배경 및 목적

□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가 계속되면서 경제적 양극화현상에 따른 복지재정 및 그와 관련된 법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

□ 2013년 재정법제연구사업은 국가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국가재정법 관련 연구를 목적으로 함

Ⅱ. 주요 내용

□ 세부적으로 보면 2013년의 재정법제연구사업은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운영을 위한 법제개선방안’, ‘국민연금재정의 지속가능한 관리·운용을 위한 법제개선방안’, ‘일본의 중앙과 지방간 사회복지재정 배분제도 연구’, ‘프랑스의 중앙과 지방간 사회복지재정 배분제도연구’, ‘영국의 중앙과 지방간 사회복지재정 배분제도 연구’, ‘지방보조금 법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등을 수행함

□ 6개의 수시연구보고서와 2개의 이슈페이퍼가 발간됨

Ⅲ. 기대효과

□ 2013년 재정법연구사업은 국가의 복지재정정착과 입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주제어 : **복지재정, 건강보험재정, 국민연금재정, 중앙과 지방사이의 복지재정배분, 지방보조금**

Abstract

Ⅰ. Background and Purpose of Research

□ In the global economic crisis, there is increasing interest in the national financial legislation on welfare finance and system.

□ The Subject of Public Finance legislation Research 2013 is welfare spending and financial balance in national finance law.

Ⅱ. Lessons from Other Countries

□ Research topics of the 2013 are ‘A Study on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Legal Institution for its sustainable management and development’, 'Legislative Reform Initiative for Sustainable Management and Operation of the National Pension Fund, ‘Research on the Distribution of Social Welfare Funds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in Japan’, ‘Research on the Distribution of Social Welfare Funds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in France’, ‘Research on the Distribution of social Welfare Funds between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in England’ and ‘A study on plan for improving legal system relating to local subsidy’.

□ The Reports in six and the Issues Papers in two about the welfare spending and financial balance was published

Ⅲ. Legal Improvements

□ The Public Finance legislation Research 2013 would be expected to works for the supporting national financial policies and legislation.

Key Words : welfare finance,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 National Pension Fund, Distribution of Social Welfare Funds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local subsidy

3목 차

요 약 문 ····· 3

Abstract ····· 5

Ⅰ. 2013년 연구사업의 목표와 기본방향 ····· 9

1. 재정법제연구의 의의 ····· 9

2. 재정법제연구사업의 목표 : 재정법 원칙 연구심화 ····· 9

3.「재정법제연구사업(X)」의 수행 방향 ····· 12

Ⅱ. 2013 연구사업 개요 ····· 15

Ⅲ. 2013년 연구사업 추진체계 ····· 17

1. 재정법제연구사업 연구진 현황 ····· 17

2. 외부 전문가 자문단 ····· 17

Ⅳ. 2013년 연구사업 추진결과 ····· 19

1. 2013년 수시연구과제 수행 ····· 19

2. 재정법제 이슈페이퍼 발간 ····· 20

3. 정책현안분석 ····· 20

4. 2013년 학술회의 ····· 20

◎ 수시과제 ····· 23

1. 영국의 중앙과 지방간 사회복지재정 배분제도 연구 ····· 25

2. 일본의 중앙과 지방간 사회복지예산배분제도 연구 ····· 32

3. 프랑스의 중앙과 지방간 사회복지재정 배분제도 연구 ····· 40

4.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운영을 위한 법제개선방안 ····· 49
5. 국민연금재정의 지속가능한 관리・운용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 54
6. 지방보조금 법제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 63

◎ 이슈페이퍼 ····· 75
1. 일본의 재정개혁 법제에 대한 최근의 동향 ····· 77
2. 예산순기의 변화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 79

◎ 공동학술대회 개최 실적 ····· 83
1. “실질적 지역복지의 실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공동학술대회 ····· 85
2. “2013 재정법제의 최근 이슈”, 한국재정법학회・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와 공동학술대회 ····· 87
3. “국가와 계약”, 행정법이론실무학회 공동학술회의 ····· 89
4. 특별워크숍 : “재정법제연구사업 10년차 성과발표회 - 재정법제의 현재와 미래” ····· 91

◎ 워크숍 개최 실적 ····· 93

Ⅰ. 2013년 연구사업의 목표와 기본방향

1. 재정법제연구의 의의

○ 재정법제는 예산·회계, 결산, 연금·기금, 국가계약, 국유재산관리, 공공기관 성과관리, 재정투융자사업, 조세·준조세, 복지, 통일재정 등 국가재정과 관련한 광범위한 영역을 대상으로 함

○ 「재정법제연구」는 우리나라 재정법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주요국의 관련 법제에 대한 조사·분석 등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국가재정정책 및 입법정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재정법제연구사업의 목표 : 재정법 원칙 연구심화

○ 일관된 재정법제 시스템에 의하여 국가재정의 투명성(transparency), 안전성(stability), 책임성(responsibility), 효율성(efficiency) 등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련법제 현안분석, 비교법 연구, 입법정책 제시 등 수행

○ 2004년 “국가재정 관련법제의 현안과 과제”, 2005년 “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법제개선 연구”, 2006년 “재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법제개선 연구”, 2007년 “재정시스템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법제개선 연구”, 2008년 “재정시스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법제개선 연구”, 2009년 “성장동력확충을 위한 재정법제 연구”, 2010년 “국가재정기반 확충 및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법제 연구(Ⅰ)” 수행, 2011년 “국가재정기반 확충 및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법제 연구(Ⅱ)” 수행, 2012년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재정법제 연구” 수행

○ 국가재정운용의 기본적인 목표는 효율적인 재정 운용과 아울러

재정 건전성을 달성하는 것임 현대국가는 행정의 역할 증대와 다양화로 인해 재정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아울러 국가재정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바, 재정의 '효율성·건전성·투명성'을 기조로 우리나라 재정운용시스템을 개선하고 관련 법제를 정비하기 위한 지속적인 연구가 요청됨

< 연도별 재정법제연구사업 주요내용 개관 >

수행연도	주요 연구내용
2004	**「국가재정 관련 법제의 현안과 과제」**라는 주제로 , 공기업 예산·회계, 국가채무, 독일 예산개혁 등에 관한 법제연구를 주요 과제로 추진하고, 기금의 투명성·안정성, 예·결산제도상의 국회와 정부간의 권한 조정 등 정책현안에 대한 연구 수행
2005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법제개선 연구」**라는 주제로, 재정건전운영을 위한 비교법적 연구(독일/미국)를 주요 과제로 추진하고 아울러 예산의 법적 성격과 통제, 예산항목별 권한 문제, 재정헌법 등 연구 수행
2006	**「재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법제개선 연구」**라는 주제로, 재정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보공개법제, 정부계약의 투명성 제고, 지방재정의 건전성 제고 등을 주요 연구과제로 추진하고, 아울러 국제통화기금의 국가재정 투명성 운영기준 도입, 중앙과 지방의 재정분쟁조정제도, 지방의 영리경제적 활동 등 세부 현안에 대한 연구 수행
2007	**「재정시스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법제개선 연구(Ⅰ)」**라는 주제로, 예산집행, 재정투융자, 준조세 등에 대한 투명성 제고를 위한 법제개선방안을 주요 연구과제로 추진하여였고, 국가재정과 주택금융제도(미국/일본/독일), 일본의 지방재정제도 개혁, 주민참여를 통한 재정투명성 확보방안 등 연구 수행
2008	**「재정시스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법제개선 연구(Ⅱ)」**라는 주제로, 정책금융의 효율성 제고, 회계검사 및 결산법제 개선방안 등을 주요 연구과제로 추진하고,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의 비교법적 연구, 국유재산법 전면 개정, 성인지 예산제도, 지방재정지원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독일/프랑스/미국/일본) 등 수행

수행연도	주요 연구내용
2009	**「성장동력확충을 위한 재정법제 연구」**이라는 주제로, 주요국가의 재정 관련법제에 대한 현황과 쟁점을 분석하고(독일/프랑스/오스트리아/일본), 공적 자금관리의 적정성 제고, 민간투자사업관리법제 개선 등 연구 수행
2010	**「국가재정기반 확충 및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법제 연구(Ⅰ)」**라는 주제로 국제금융위기 대응을 위한 재정안정 방안, 예산법률주의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저출산·고령화 대응, 자금세탁방지, 공기금에 대한 관리 및 통제, 중기재정계획 내실화 방안, 미국 재정법상 PAYGO 준칙에 관한 연구, 중앙과 지방재정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 등 수행
2011	**「국가재정기반 확충 및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법제 연구(Ⅱ)」**라는 주제로 전년도에 이어서 국가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조성을 위해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법제 연구로서 의무지출의 효율적 관리 및 통제를 위한 연구, 재정기반 확충을 위한 국가채무 관련 법제연구와 국가채권관리법제 개선 연구 등을 수행하며, 예산제도 선진화를 위한 법제 연구로서 준예산제도의 범위에 대한 법적 규명, 예산심의기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법적 연구 등을 수행하며, 최근 현안으로 제기되는 국가·지방 계약제도 선진화를 위한 관련 법제 연구를 추진할 예정
2012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재정법제 연구」**라는 주제로 중앙과 지방의 재정건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함. 중앙정부적 차원에서는 총량적 재정준칙 도입에 관한 내용으로서 세부적으로 EU조약의 재정규율, 세출규칙, 차입규율, 국가채무의 재정규율 등을 연구할 계획 또한 지방재정건정성 확보를 위해서 재정법체계, 지방세제, 지방교육재정법제, 지방공기업법제에 관한 과제를 수행할 예정 그리고 장기적 관점에서 통일재정은 재정건전성에 위험요인으로 인식된다는 점에서 통일재정연구사업을 여기에 포함
2013	**「복지지출과 재정건전성」**이라는 주제로 연구를 수행함. 세계적 금융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지출 확대로 재정상황은 더욱 악화됨. 이런 문제인식을 갖고 영국, 일본, 프랑스에서 중앙과 지방간 사회복지재정배분제도에 관한 연구와 국민연금재정 및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운영을 위한 법제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를 수행함

3.「재정법제연구사업(X)」의 수행 방향

□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은 아직까지는 양호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세계경제의 불안에 대비하고 향후 저출산 고령화 사회와 남북통일 등에 따른 재정소요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재정안전성을 더욱 견고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음.

□ 최근 10년간 우리나라의 복지제도는 양적으로 크게 늘었고 그에 따라 매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 복지지출 증가의 속도와 폭은 향후 우리나라 재정건전성을 좌우할 때 매우 중요한 요인임.

□ 2013년 재정법제연구사업은 위와 같은 정부현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복지재정과 관련된 수시연구과제를 수행함

□ 수시과제와 함께 이슈페이퍼 및 기획재정부의 현안과제에 대응한 법제현안분석을 수행함

- 기획재정부의 요청에 따라 국정과제 등 주요 정부현안을 재정법적 시각을 통해 검토함으로써 재정법제사업의 정책적 실효성 제고

□ 기획재정부의 현안과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서 외부 위탁연구결과의 정책 실효성 제고 및 정책 자문단 활동 등 내외협력체계를 보강함

- 정부부처, 학계, 산업계 등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문가회의 및 워크숍을 수시 개최함으로써 연구결과의 정책반영도 제고

※ 특히, 기획재정부 및 각 현안 관련 부처, 국회 등과의 협력 강화

- 기존의 사업 및 연구성과를 기반으로 하여 재정법제연구의 인프라 및 전문가 POOL 구축을 강화하며 재정법학 영역에 대하여, 학제적 범위 확대 및 국제적 범위 확대 등 인프라를 유지·관리

□ 국가적 재정법제 운용의 기반 확충 및 당면한 재정법제 관련 현

안에 대한 이론적, 실질적 연구를 수행함. 아울러 아직 부족한 재정법학 연구 토양을 북돋기 위하여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여 재정법연구활동을 장려・확산함

Ⅱ. 2013 연구사업 개요

분류	과 제 명
수시연구과제	영국의 중앙과 지방간 사회복지재정 배분제도 연구
	일본의 중앙과 지방간 사회복지재정 배분제도 연구
	프랑스의 중앙과 지방간 사회복지재정 배분제도 연구
	국민건강보험의 지속가능한 관리·운용을 위한 법제개선방안
	국민연금재정의 지속가능한 관리·운용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지방보조금 법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이슈페이퍼	제1호 일본의 재정개혁 법제에 대한 최근의 동향
	제2호 예산순기의 변화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학술회의	한국지방자치법학회 공동학술회의 “실질적인 사회복지법제 정착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한국재정법학회·한국외국어대학교 공동학술회의 “2013 재정법이슈와 과제”
	행정법이론실무학회 공동학술회의 “국가와 계약”
	특별워크숍: “재정법제연구사업 10년차 성과발표회 - 재정법제의 현재와 미래”

Ⅲ. 2013년 연구사업 추진체계

1. 재정법제연구사업 연구진 현황

□ 원내 연구진

○ 김지훈 (연구책임자/ 부연구위원, 법학박사, 행정법)
○ 최　유 (부연구위원, 법학박사, 헌법)
○ 김지영 (부연구위원, 법학박사, 행정법)
○ 미즈시마 레오 (초청연구원, 법학박사, 헌법)
○ 홍종현 (초청연구원, 법학박사, 헌법)
○ 김영미 (초청연구원, 법학박사, 사회보장법)

2. 외부 전문가 자문단

□ 다양한 전문가 그룹 연구망 구성 및 내외 협력 제고

- 재정법 분야 특성상 다양한 관련기관 실무자(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법제처,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등)와 다양한 학제적 연구자(법학, 행정학, 경제학 등) 그리고 다양한 연구소(한국조세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등 관련 연구자들이 존재
- 종합적·실제적 연구를 위한 실무가 및 전문가를 중심으로 워크숍 등을 통해 공동연구 및 협력 모색

(※ 특히, 재정법 연구 저변 확대를 위해 기존 전문가 외에 새로운 신진 학자 발굴, 공동연구 등 확대)

Ⅳ. 2013년 연구사업 추진결과

1. 2013년 수시연구과제 수행

□ 재정현안에 대처하는 재정법 사업의 특성에 따라 2013년은 수시과제로서 ‘복지지출과 재정건전성’에 관한 연구사업을 진행함.

□ 현재 법제개선의 현안이 되어 있는 중앙과 지방간의 사회복지재정배분에 관하여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중앙집권제 형태를 지닌 국가들을 중심으로 비교법 연구를 수행함

□ 복지지출 중 국가예산과 관련하여 중요한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과 관련한 재정법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를 진행함

□ 복지재정의 전달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보조금에 관한 과제를 하반기 재정법제연구사업의 수시과제로 수행함

과 제 명	연구책임자
영국의 중앙과 지방간 사회복지재정 배분제도 연구	최 유 (부연구위원)
일본의 중앙과 지방간 사회복지재정 배분제도 연구	미즈시마 레오 (초청연구원)
프랑스의 중앙과 지방간 사회복지재정 배분제도 연구	전주열 박사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국민연금재정의 지속가능한 관리·운용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김영미 (초청연구원)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한 관리·운용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홍종현 (초청연구원)
지방보조금 법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지영 (부연구위원)

2. 재정법제 이슈페이퍼 발간

□ 2010년부터 기획재정부 정책현안과 재정포럼을 통한 현안재정문제에 대한 신속한 정책 및 입법자료 제공을 위하여 이슈브리프 형식의 『재정법제 이슈페이퍼』 발간함.

□ 2013년에는 기획재정부의 요청에 따른 2건의 이슈페이퍼를 발간함

□ 2013년 이슈페이퍼 발간 내역

과 제 명	수 행
제1호 일본의 재정개혁 법제에 대한 최근의 동향	미즈시마 레오
제2호 예산순기의 변화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홍종현

3. 정책현안분석

□ 기획재정부와의 정책협의회를 통한 현안과제 선정·발굴을 통한 입법지원

□ 2013년은 기획재정부(예산실, 재정관리국, 공공정책국 등)와의 정책실무협의회를 정례화하여 정책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수행함.

4. 2013년 학술회의

○ “실질적인 사회복지법제 정착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주제로 하여 학술세미나 개최(7월 11일/한국지방자치법학회 공동)

○ “2013 재정법이슈와 과제”를 대주제로 하여 한국재정법학회 및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와 공동학술세미나를 개최(10월 1일/한국재정법학회・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공동)

○ “국가와 계약”을 주제로 한 공동학술세미나 개최(10월 12일/행정법이론실무학회 공동)

일시/장소	학술대회명	공동참여기관
7월 11일 /동국대학교	“실질적인 사회복지법제 정착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10월 1일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재정법학회・한국외국어대학교 공동학술회의 “2013 재정법이슈와 과제”	한국재정법학회,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원
10월 12일 /고려대학교	“국가와 계약”	행정법이론실무학회

○ 재정법제연구사업을 종료하면서 성과평가 및 향후 과제를 주제로 하여 특별워크숍을 개최함

12월 6일(예정) /양재동 엘타워	“재정법제연구사업 10년차 성과발표회 - 재정법제의 현재와 미래”	연구원 내외의 재정법 전문가

수시과제

1. 수시과제 1 :

영국의 중앙과 지방간 사회복지재정 배분제도 연구

▣ 연구책임자

최 유 부연구위원 (법제분석지원실)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최근 복지사무의 확대와 지방으로의 이양에 따라서 지방재정의 자체수입 증가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지방의 사회복지분야 세출증가율이 더 높음

※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 연평균 증가율(2007~2011년): 2.8% 증가
사회복지 분야 세출예산 연평균 증가율(2008~2012): 9.3% 증가
국고보조금 대응 지방비 : `08년 12.2조원→12년 20.6조원, 연평균 13.8%증가

□ 사회복지분야의 사무이전과 국고보조사업에 대응한 지방비 증가에 따라 재정자립도가 약한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의 경우에는 재정확보의 어려움이 현실화됨

□ 지방간 재정적 격차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사회복지의 최소보장수준(national minimum)을 유지하기 위해선 지방복지재정의 안정적인 재원조성이 필요함

□ 이처럼 중앙과 지방의 복지재원에 관한 역할분담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연방국가가 아닌 영국에서의 중앙과 지방의 복지재원 배분방식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 영국은 지출배분공식(Formular Spending Share, FSS) 제도를 통하여 국고보조금을 배분하고 있음 또한 영국행정자치부는 매년 ‘지방정부 국고보조금 분배 관련 검토 보고서(Local Government Finance Formular Grant Distribution Consultation paper)’를 발간하여 지방정부별로 각종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수요변화를 확인하고 이를 지출배분공식에 반영하여 복지서비스에 대한 적절한 수요대처와 효과성을 높임

□ 이러한 영국 사회복지재원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찾고 자 함

□ 중앙과 지방간의 복지재원 분담에 관한 영국제도를 연구하여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도출함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선행연구	1	-과제명: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연구자(년도): 국회예산정책처(2011) -연구목적: 중앙정부의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의 확대영향으로 지방의 재정부담	-문헌조사 -외국제도조사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의 대응 지방비 영향요인 분석 -외국의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 운영 사례 분석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이 지속적으로 증가함 이에 따라 지방재정건전성유지와 함께 사회복지서비스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제도개선방안이 필요함		
	2	-과제명: 지방화시대의 중앙·지방간 사회복지 역할분담 방안 -연구자(년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6) -연구목적:지방화와 분권화의 가치에 따라서 중앙과 지방의 사회복지 역할 분담에 관한 외국제도를 조사함	-문헌조사 -외국제도조사	-우리의 복지서비스에 관한 사무와 재정분권 관련제도의 현안분석 -주요 외국의 중앙과 지방의 사회복지역할분담 분석 -중앙과 지방의 사회복지 역할 개선과제 제시
본 연구		-중앙집권제 및 중앙에서의 지방으로의 복지재원이 전규모가 큰 영국의 복지재원배분제도를 연구하여	-문헌조사 -외국법조사	-영국의 복지시스템 분석 -영국의 재출배분공식제도 분석 -영국의 행정자치부의 '지방정부 국고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도출함		조금 분배 관련 검토 보고서' 분석

▣ 주요 연구 내용

□ 영국의 사회보장제도의 종류와 내용
□ 한국과 영국 사회보장제도 사이의 공통점과 상이점 비교검토
□ 영국 복지재정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분담 현황연구
□ 영국에서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전되는 사회복지재원의 종류와 규모 그리고 분배절차분석
□ 사회복지재원을 배분하는 영국의 지출배분공식(Formular Spending Share, FSS)의 형성과정과 내용소개
□ 영국행정자치부가 매년 발간하는 '지방정부 국고보조금 분배 관련 검토 보고서(Local Government Finance Formular Grant Distribution Consultation paper)'의 내용을 분석하여 시사점 검토

▣ 연구 요약

□ 영국복지재정의 특색
ㅇ 영국 사회복지제도의 특색
- 영국경제의 특색은 실물경제보다 화폐경제가 발달함. 금융위기와 같은 외부경제에 영향을 더 많이 받음.
- 1980년대 대처수상이래로 복지서비스와 재정의 확대보다는 국가채무감소를 위한 복지축소 및 효율화를 기도함
* 그럼에도 현 실적으로 복지서비스는 일정수준을 유지함
- 영국의 의료보험제도와 연금제도 그리고 사회복지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조세를 재정적 기반으로 함
- 의료보험과 연금제도의 재정과 전달체계에 있어서 지방자치단

체의 역할은 없음

-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서비스가 간접적으로 의료보험과 연금제도의 영향을 줌

* 가령 노인수발서비스를 통하여 의료비지출을 줄임

- 특징적으로 의료보험과 연금제도에 조세가 투입된다는 점이 다른 서구국가인 독일, 프랑스와 구별됨

* 의료보험제도와 연금제도에 비해서 영국의 사회 복지서비스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음

- 영국의 사회복지서비스는 개별 법률에 근거한 사회복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함

* 1968년 시봄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아동부, 복지부, 보건부를 사회서비스로 통합

- 사회복지 서비스는 전달체계는 중앙과 지방간의 재정분담 체계에 속해 있음

* 즉, 현금지급 성격의 사회복지서비스는 중앙정부가 직접 담당하고 서비스제공은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한다는 배분원리에 따름

* 따라서 복지재정분담이 문제되는 영역은 주로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회복지서비스임

- 영국에서 주택과 교육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 사무로 분류됨. 즉, 사회복지 서비스에 주택과 교육은 포함되지 않음
- 노인, 아동, 장애인 등에 대한 구호 내지 수발서비스들이 사회복지 서비스의 주요한 내용이 됨

□ 영국의 중앙과 지방의 복지재정배분제도의 특색

○ 영국 사회복지재정의 배분원칙

- 복지재정배분에 있어서도 국가가 담당하는 것이 원칙,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서비스를 하는데 필요한 재원은 중앙정부의

이전재원에 의존함

* 즉, 국세 대 지방세 비중이 거의 9:1로서 현저히 차이남

* 유일한 지방세인 카운슬세(Council tax)는 전체 세입 중에 4~5%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서비스의 재원은 거의 이전재원에 의존함

- 지방의 이전재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됨

* 포괄보조금 : 세입지원보조금(Revenue Support Grant), 비거주건물세(National non-domestic rate), 각 부처별 개별보조금을 통합한 지방서비스교부금(Local Services Support Grant)

* 특정보조금(Specific grants) : 경찰보조금 등

- 포괄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세입지원보조금은 우리의 교부세와 유사하고 특정한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특정보조금은 우리의 보조금사업과 비슷함

- 영국 사회복지 서비스의 상당부분은 포괄보조금에 의함

* 최근에는 세입지원보조금 같은 포괄보조금보다 경찰보조금과 같은 특정보조금의 수와 양이 늘고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이 축소된다는 비판이 있음

- 보조금의 배분은 지출배분공식(Formula Spending Shares; FSS)에 의함

* 지출배분공식은 기본적으로 개별서비스별로 주민 1인당 서비스를 공급하는 기본비용을 산정하고 여기에 빈곤정도, 지연면적, 지방세 징수능력 등도 고려됨

- 각 지역의 사회복지서비스 수요를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지역 자주재원 정도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함

* 이러한 점에서 독일과 프랑스와 같은 수평적 재정조정제도는 따로 두고 있지 않음

▣ 워크숍 및 전문가회의 개최실적 및 개최계획

1. 제 1 차 워크숍

(1) 개 요

○ 주제 : 영국의 중앙과 지방간 사회복지재정배분제도연구

○ 일시 : 2013. 4. 26(금) 16:00 - 18:00

○ 장소 : 한국법제연구원 1층 소회의실

(2) 세부일정

* 사회: 김지훈 실장 (한국법제연구원 법제분석지원실)

(1) 연구개요발표 : 영국의 복지사무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2) 주제발표 (16:00-17:00) : 영국복지재정의 배분제도와 평가절차

- 김보영 교수 (영남대학교 지역및복지행정학과)

(3) 토 론 (17:10-18:00)

- 김현아 박사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이채정 사업평가관(국회예산정책처)
- 김지영 부연구위원
- 미즈시마 레오 초청연구원
- 김영미 초청연구원
- 홍종현 초청연구원

2. 수시과제 2 :

일본의 중앙과 지방간 사회복지예산배분제도 연구

▣ 연구책임자

미즈시마 레오 초청연구원(법제분석지원실)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최근에 유럽에서는 재정이 파탄했다는 국가가 곳곳에 생겼음. 일본도 1995년 이후에는 심각한 재정위기에 직면하고 있으며 재정재건은 여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오히려 적자 액수는 해마다 커지고 있는 상황임.

□ 세계 선진국에서는 복지정책의 확대의 필요성이 주장되어 있으나 복지정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방대한 재원이 필요함. 그러나 복지정책을 확대하면 할수록 재원이 부족해지고 재정의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는 딜레마가 존재함.

□ 한국도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경제 민주화', '복지의 확대', '고용의 창출'이라는 세 가지가 주로 크게 주장되었으며 앞으로 복지의 중요성이 크게 논의될 것으로 보임.

□ 다른 선진국 각국(유럽 일부 국가나 일본)과 비교하면 한국에서는 아직 재정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그러나 앞으로 복지정책을 확대할 경우에는 거대한 재원이 필요하게 되므로 한국 역시 재원 확보를 어떻게 할지는 큰 문제가 될 것이라 예상됨.

□ 일본에서는 2001년 고이즈미 정부 시대에 ‘삼위일체의 개혁’이 시행되었으며, 지방분권을 함으로서 재원을 중앙과 지방에 분배하여 중앙정부의 과잉부담을 완화하도록 하였음. 재정대책과 지방분권을 함께 하려고 한 일본의 정책은 앞으로 지방분권을 할 필요가 있는 한국에서도 큰 참고가치가 있을 것이라 생각됨.

□ 그리고 한국에서도 앞으로 복지정책을 확대함에 있어서 중앙과 지방에서 각각 어떻게 재원을 마련하는 것에 좋을지, 복지정책이나 지방분권 등 다양한 관점에서 복지 재정에 대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음.

□ 한국에서는 최근에 복지의 확대가 크게 이슈가 되었으며, 이러한 복지 정책을 충분히 실행하기 위해서는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논의할 필요가 있음.

□ 이웃나라인 일본에서는 1995년부터 심각한 재정위기를 인식하기 시작하였음. 일본에서는 이러한 재정위기를 완화하기 위하여 2001년에 ‘3위1체의 개혁’을 시작하였음. 이것은 지방분권을 통해서 국가와 지방의 역할분담을 추진하였으며, 지방으로 세원을 이양해서 중앙정부의 재정 부담을 완화시킴으로서 지방분권을 함께 하겠다는 내용이었음.

□ 한국에서는 다른 선진국보다도 중앙집권적인 측면이 강한 것으로 보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원 분담을 통해서 재정위기를 완화하겠다는 일본의 정책은 앞으로 복지정책을 확대하려고 할 한국에서도 시사점이 있을 것이라 생각됨. 본 연구에서는 주로 ‘복지의 확대’라는 관점에 주목하여 여러 재정 중에서도 특히 복지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자 함.

□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지방분권을 통해서 재정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삼위일체의 개혁에 중점을 두고 연구하고자 함. 삼위일체

개혁을 통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어떻게 역할분담이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보고 재정 건전화를 위한 지방분권의 역할을 조사 및 연구하고, 결과적으로 복지정책에 필요한 재원이 얼마나 확보되었는지를 알아내고자 함.

□ 한국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등 지방분권이 시작되었음. 한국에서 중앙과 지방의 재정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 심각한 재정위기를 맞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복지 정책과 재정 운용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를 연구하고자 함.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선행연구	1	이정만 “중앙지방간 재정관계의 관점에서 본 일본 지방재정의 특징과 변화” 한국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Vol.2010 No.6 [2010]	- 문헌연구 - 일본 조세 연구	- 일본의 중앙과 지방의 세입과 세출의 규모의 데이터를 제시하여 통계학적으로 분석함.
	2	森信茂樹「国・地方の財政調整と税源移譲問題に関する一考察」PRI Discussion Paper Series No. 01 A-04., 財務省財務総合政策研究所研究部 (2001)	- 문헌연구 - 일본 제도연구	- 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확보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이는 것으로 보임.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3	松田直樹「国と地方の税財政関係の再構築の方向性 -税源移譲のあり方、異議及び効果の検討を中心として-」税大論叢、第44号(2004)	- 문헌연구 - 일본 세제연구	- 2001년의 고이즈미 정부 이후에 실시된 삼위일체의 개혁 때 이루어진 중앙과 지방의 재정관계를 주로 연구하고 있음.
본 연구		- 종전의 연구는 주로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연구한 것이 많으므로 본 연구는 법학적인 측면에서 연구하고자 함.	- 문헌조사 - 일본법 조사	- 지방자치의 연혁과 현황 - 중앙과 지방간 재정관계 - 재정위기에 대한 방안 제시 - 복지정책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한 방안 모색

▣ 주요 연구내용

□ 일본에서는 1945년 이후에 지방자치 내지 지방분권이 논의되기 시작하였음. 따라서 먼저 핵심적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일본의 지방분권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일본의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에 대한 역사적 연혁과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할 것임.

□ 이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고 중앙정부과 지방정부의 재정적인 관계가 어떻게 운용되어 있는지를 조사할 예정임. 여기서는 특히 복지 관련 재정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조사할 것임.

□ 마지막으로 최근에 일본이 직면하고 있는 재정적자 문제에 대해서도 소개할 것임.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재정적자와 복지정책의 확대라는 상반된 과제를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본 연구에서는 지방분권을 통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에서 복지정책에 필요한 재원을 각각 조정함으로서 복지에 필요한 재원이 어떻게 확보되어 있는지를 조사하여,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 검토 및 현안사항 -

□ 본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재정'과 '지방분권'의 어느 쪽 측면에서 접근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좋을까 검토 및 고민하였음. '재정'의 측면에서 접근하여 초점을 맞출 경우에는 경제학적인 분야에 대해서도 큰 비중을 두고 연구할 필요가 있으므로 법학 연구자 입장에서는 영구영역의 타당성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됨.

□ 따라서 '지방분권' 내지 '지방자치'의 측면에서 접근하여 지방분권의 관점에 입각해서 연구를 수행하면 연구자의 적성과 법학적인 지식을 잘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됨.

▣ 연구 내용 요약

□ 연구의 배경

○ 개인간 자유로운 경쟁과 사유재산의 축적이 가능한 자본주의의 기반을 둔 현대사회에서는 빈부격차가 점차 확대되고 있음.

○ 한국에서는 2012년의 제18대 대통령 선거 당시 대선후보들의 공약을 통해 ‘경제 민주화’, ‘고용 창출’과 함께 ‘복지 확대’가 크게 논의되었음.

○ 그런데 복지의 확대를 위해서는 충분한 재원이 확보되어야 하지만 많은 선진국의 경우와 같이 재정적자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건전한 재정과 복지확대 사이에 딜레마에 있다고 할 수 있음.

○ 선진국 각국에서는 공적부조나 사회보장 등의 복지정책을 실현함에 있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재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재정문제를 완화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으며, 한국에서 복지정책 추진 시 예견되는 재정과 관련된 문제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선진국 각국의 제도를 연구할 필요가 있음.

□ 연구의 목적

○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법제와 정책을 통해 복지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재원을 분담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함.

○ 현재 일본은 심각한 재정적자에 직면하고 있으며, 복지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한 재원은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 배분되어 있음.

○ 특히 복지정책 중에서도 공적부조를 중심으로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간 재정의 배분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연구하고자 함.

○ 일본에서 논의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복지재정배분을 연구하는 것으로 ‘복지 확대’가 대통령선거의 쟁점이 될 정도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에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 본 연구는 주로 두 가지 내용으로 구성됨. 첫째는 일본에서의 복지국가형성 과정과 지방자치제도에 대해서 소개하고, 둘째는 일본의 사회복지재정의 현황과 배분제도에 대해서 논의함.

□ 일본에서의 복지국가 형성과정과 지방자치제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음.

○ 일본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제정된 현행 헌법으로 복지가 보장되고 있음. 그리고 '복지 8법'이라고 불리는 여덟 개의 복지에 관한 핵심적인 법률이 제정되었음.

○ 또한 일본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지방자치제도가 정비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다양한 복지정책이 시행되었음.

□ 일본에서의 사회복지재정의 현황과 배분제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음.

○ 일본에서는 현재 국가예산의 50% 이상을 사회보장비가 차지하고 있으며 재정을 압박하고 있음.

○ 공적부조에는 생활보호, 아동수당, 아동부조수당, 장애아동복지수당, 특별장애자수당, 경제적복지수당 등이 있으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고 있음.

○ 생활보호는 국가의 부담률이 4분의 3,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률이 4분의 1로 되어 있으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률을 각각 2분의 1로 조정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음.

○ 그 이외의 많은 수당 역시 국가의 부담률이 4분의 3, 지방자치단체의 4분의 1로 배분되어 있음.

□ 따라서 일본에서는 현재 공적부조에 대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재원을 부담하고 있으나 재정적자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되지는 않음.

○ 따라서 심각한 재정적자가 계속 예견되는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서 재원을 분담하는 것으로 국가와 재정부담을 완화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재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국가에 대한 의존을 줄일 수 있으며 지방자치의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음.

□ 한국에서 논의가 된 ‘복지의 확대’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 하나의 방법론을 제시할 수 있음.

3. 수시과제 3 :

프랑스의 중앙과 지방간 사회복지재정 배분제도 연구

▣ 연구책임자

전주열 박사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연구원)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한국 사회가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에 직면하여 출산, 육아 보조 및 노인 생활안정화 정책 등을 시행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복지 사업이 확대되고 있음. 동시에 이러한 복지 사무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함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재원을 분담해야 하는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

□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재원 부담비율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나, 지자체의 자체수입은 이에 맞게 증가되지 못하고 있어서 지자체의 재정 건전성을 위협

※ 국고보조사업은 2007년 32조 원 규모에서 2012년 53조 원으로 커진 반면, 소요재원의 국가보조금 비율은 2007년 68.4%에서 2012년 60.9%로 감소. 2014년~2017년 4년간 지자체가 추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17조 8천 9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됨
(출처: 한국지방세연구원 2013년 4월 16일 정책세미나 배포자료)

□ 복지재정 지출부담의 확대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 문제는 각 지자체들 간의 재정자립도 불균형 문제와 더불어 더욱 부각됨

※ 2013년 지자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51.1%인 가운데, 서울이 87.7%인

반면 충청북도는 27.4%에 불과함
(출처: 안전행정부 발간 '2013년 지자체 예산개요')

□ 이러한 정책현안에 대해 오랜 중앙집권의 역사를 바탕으로 지방분권을 비교적 효과적으로 수행해 온 프랑스의 법제도를 연구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비교법적 연구의 의의를 지님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활동에 대한 프랑스 법제도 연구를 통해 지자체의 사회복지 사업권한의 이론적 근거에 대한 다양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음

- 프랑스 공법은 국가와 지자체의 활동을 공공서비스로 파악하는 법이론이 전통적으로 발전되어 왔기 때문에 사회복지 사업권한 분권의 논의가 지방분권의 핵심을 이룸

○ 국가 및 지방자체단체 제도의 유사성으로 인해 도출된 시사점의 적용 가능성이 높음

- 프랑스의 공법제도는 영국과 달리 우리나라와 같은 대륙법계에 속하기 때문에 실정법 개선 방안을 위한 비교와 적용 가능성이 높음
- 연방국가인 독일과 달리 프랑스는 단일국가이기 때문에 지방자치제도에 관한 이론과 실정법을 우리나라의 제도와 비교하고 적용하기 비교적 용이함

○ 국가와 지자체간 사회복지 재정 분담에 대한 프랑스 제도 현황을 연구하여 위 정책현안에 대한 재정법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사회복지 영역에서 국가와 지자체간 권한 배분에 대한 실정법과 이론의 전개과정을 연구하여 국가와 지자체간 사회복지 사업 권한 분배에 대한 비교법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특정 급부 행정을 목적으로 복수의 지방자치단체가 연합하여 재정 협력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프랑스의 지자체간 영조물법

인 제도를 연구하여 우리나라 지자체들이 복지 재정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국가 재정 적자 문제에 직면하여 지자체의 권한에 상응하는 재정지원에 대한 헌법적 원칙을 유연하게 적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프랑스 현실을 연구하여 국가 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사회복지의 안정적 제공 간의 균형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선행연구	1	- 전훈 외, 지방재정지원제도에 관한 법제연구 - 프랑스 -, 현안분석, 한국법제연구원, 2008/6 - 연구목적 : 프랑스의 지방재정자치 실현을 위한 자주적 재원확보수단으로서의 '제정자치권'과 국가의 지자체에 대한 지원제도를 연구하여 우리나라의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시사점 도출	- 문헌연구	- 지자체의 지방세를 통한 재정조달(지방세제의 특징과 종류 및 지방세율에 대한 지자체의 권한) - 국가의 지자체에 대한 재정지원 제도(경상교부금, 경상보조금 등 구체적 항목에 대한 연구와 '국가-지방간 안정화계약' 제도) - 지방분권을 위한 실정법 제도(권한 이양과 지방재정에 관한 헌법과 법률의 재개정)
	2	- 김도승,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 문헌연구	-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현황과 문제점, 지자체 재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법제 개선방안 연구 - 종합보고서 -, 한국법제연구원, 2012/8 - 연구목적 : 세입분권이 세출분권에 미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간 권한 배분 및 조율의 문제로 접근하여 지방분권 제도의 헌법적 의의 제고와 지방재정건전화를 위해 주요 현안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도출		정자주권 보장 제도 연구 - 프랑스 지방분권과 지방재정(프랑스 지자체의 재정자립 원칙, 프랑스 지방재정 일반, 사업세 폐지 등 최근의 주요 변화, 지방재정에 대한 통제 제도)
본 연구	- 프랑스 지방재정 제도에 관한 기존 연구가 주로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연구의 목적으로 한 반면, 본 연구는 지방재정과 국가재정 간의 권한 내지 부담의 적정한 분담을 목적으로 함	- 문헌연구	- 선행연구가 주로 지방재정 일반에 대한 연구인 반면, 본 연구는 사회복지 영역에 한정하여 지방재정을 연구함 - 선행연구를 통해 프랑스 지방재정 제도에 대한 일반적 내용과 최근의 구체적 변화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나, 본 연구는 구체적 권한배분 현황을 바탕으로 이에 따른 재정분권 내지 재정분담을 연구하고자 함 - 특정 급부행정 제공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들 간의 재정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조직하는 공법인 제도에 대해 연구함

▣ 주요연구내용

□ 사회복지 관련 프랑스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제도

○ 프랑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격차 등 재정관련 최근 현안

- 중앙과 지방간의 재원 배분 문제
- 지방의 재정건전성 관련 최근 논의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제도의 최근 주요 현황 및 쟁점 분석

- 2012년 지방 직접세제(fiscalité directe locale) 주요 변화 분석
- 2012년 예산법률에 첨부된 황서(“지자체에 대한 국가의 재정이전(Transferts financiers de l'Etat aux collectivités territoriales)”)의 주요 내용 분석
- 재정총국에 2013년 4월에 발간한 2012년 지방재정 보고서(Premières tendances 2012 des finances locales)의 주요내용 분석
- 2012년부터 시행되는 ‘공공정책 근대화 개혁 조치’(modernisation de l'action publique)에 따른 지방재정의 영향
- 2010년에 570억 유로(약 85조원)에 이른 지자체에 대한 국가지원(concours de l'Etat) 제도 분석 및 요약
- 부가가치세 보전 기금 제도를 통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투자재원 지원 제도

- 각 부처별 지방세 감면 제도와 이에 대한 보전 제도 현황
- 2011-2013 예산에서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동결

※ 90년대부터 시행된 '안정화 계약'과 2009-2012년 예산계획법률 제7조에 불구하고 2011-2013년 예산에서 부가가치세 보전을 제외한 영역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을 동결. 이는 국가부채 조절과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 효과에 따른 것임

○ 이어 사회복지 분야 지방재정 관련 구체적 사례 분석(관련 법률을 중심으로)

- 즉, 지방분권 정책에 따른 사회복지 사업 권한 이전 법률과 이에 따른 재정분권을 분석함
- 이를 통하여 프랑스에서 복지재정과 관련하여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원배분에 관한 제도적 시사점을 도출함

※ 주요 검토 대상 법률

- 노인연금(L'allocation personnalisée d'autonomie) 사업에 관한 2003년 법률
- 근로 능력 상실자에 대한 생계비 지원(revenu de solidarité active) 사업에 관한 2008년 법률
- 기타 (직업)교육 사업 권한 분권에 관한 제반 법률들

□ 프랑스 지방재정법상 지방자치단체들 간의 재정 균형화에 관한 법제도 분석

○ 2003년 헌법개정법률 제72-2조를 필두로 한 지자체 재정 균형화 법령 분석

- 수평적 균형화, 수직적 균형화, 부정기적 균형화 조치들에 대한 법령 등 분석
- 2011년 예산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초지방자치단체 간 예산 균형화 기금 제도(fonds national de péréquation des recettes fiscales intercommunales et communales) 분석

○ 기초지자체간 재정협력에 관한 법제 분석
- 최근 지자체간 재정협력 현황(le bilan 2012) 분석
- 지자체간 재정협력 공법인 제도의 개념 및 지방재정법 측면에서의 특성 분석
- 주로 특정 급부행정 제공을 목적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이 연합하여 구성하는 복수지자체 연합 영조물법인 제도(établissements publics de coopération intercommunale, EPCI) 설립 근거 법령과 재원 조달 기제 분석

▣ 연구추진방법

□ 국내외 관련 자료에 의한 문헌연구
□ 법제분석지원신청기관 담당공무원, 관련분야 연구자, 전문가 등과의 협력회의 및 자문
□ 주요 쟁점 정리와 연구의 질 제고를 위한 워크숍 및 전문가회의 개최

▣ 연구요약

최근 우리사회는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로 복지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복지재정이 부족한 어려움에 처해있다. 특히, 국가가 특정 복지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면서 지자체가 지는 복지사무에 대한 재정적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 재정수요에 대해 지자체의 수입은 오히려 줄어들어 복지재정 조달이 한창 어렵고 중요한 정책현안이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프랑스에서 사회복지재정을 중앙과 지방 간에 어떻게 배분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프랑스는 우리와 비슷한 법체계와 단일국가라는 공통점으로 인해 우리나라 제도에 비교적 적용가능성이 높은 제도적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프랑스가 복지재정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프랑스 복지제도를 개괄적으로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프랑스 복지제도의 발달 역사를 살펴보면 중세시대로부터 프랑스 사회에서 사회공동체가 사회적인 방식으로 빈곤과 같은 문제에 대응하기 시작한 것을 알 수 있다. 당시에는 기독교 '자비' 정신에 기대어 교회를 필두로 공공 원조가 조직되었다. 18세기에는 프랑스 대혁명에 따라 공권력 주체에게 복지를 제공할 의무를 강조하였으며, 이에 터잡은 일련의 복지 입법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 법률들은 안정적으로 시행되지 못하였다. 19세기에는 산업혁명과 도시화가 가속화되는 동시에 자유주의의 영향으로 공공주체의 개입보다는 노동자들 간의 상호 비용 분담의 방식으로 위기에 대비하는 일종의 사회보험제도가 생겨나기 시작한다. 20세기부터는 세계대전의 결과로 보편적 복지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비버리 보고서를 모델로 한 사회보장 제도를 수립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졌다.

이처럼 프랑스에서는 각 시기의 경제적, 사상적 배경에 따라 다양한 사회부조, 사회서비스, 사회보험이 생겨났고 오늘날도 이렇게 다양한 제도들이 공존하며 전체 복지제도를 형성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주제로 삼고 있는 복지재정의 분담에 관한 법제도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사회보장에 집중하는 것이 타당하다. 왜냐하면, 사회보험은 원칙적으로 잠재적 수혜자들의 일정한 재원 분담으로 형성되는 기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가 재원을 분담할 제도가 중요한 의미를 갖지 않기 때문이다.

사회부조는 법으로 공공 주체의 제공 의무를 정하고 있으며, 그 재원도 조세와 같은 법으로 정한 공공재정 수입으로 전체를 충당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프랑스 사회부조에 집중하여 재정분담 제도를 살펴본다. 사회부조에 관한 재정충당 방식은 1980년대 이루어진 지방분권을 전후해서 크게 달라진다. 분권 이전에는 현재

우리나라처럼 국가가 원칙적으로 재정부담을 지고 각 지방자치단체들에게 복잡한 기준에 의해 일정부분 재원을 분담시키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었다.

그러던 것이 분권이 추진되면서, 사회부조에 관한한 데파르뜨망에 일반적인 권한을 인정하게 된다. 즉,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데파르뜨망이 해당 지역의 복지 수요에 대해 복지 사업으로 대응하도록 한 것이다. 국가와 꼬뮌은 예외적으로 한정된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오늘날에는 이 권한 관계가 사회복지법전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다만, 특정 사회부조에 관해서 재정충당 방식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명확히 구분된 권한이 재정분담의 기준이 된다. 즉, 사무 권한을 가진 주체가 재정지출 부담도 안게 되는데, 국가로부터 사무를 위임받아 재정부담이 늘어난 지자체는 국가에게 필요한 재원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사무의 이전과 재원의 이전이 병행된 효과적인 분권을 추진한 것이다.

이상과 같이 프랑스에서 중앙과 지방 간에 복지재정을 분담하는 논리는 그 논리 자체를 이해하고 납득하기에는 충분히 단순하고 명백하다. 그러나, 이 제도를 참고하고자 할 때는 복지사무 권한의 이전 자체를 넘어서는 프랑스가 비교적 성공적으로, 체계적으로 추진해 온 지방분권 전체를 큰 그림에서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 지방에 권한을 이전하고 그에 상응하는 재원까지 같이 이전해 주는 것은 지방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인 동시에 중앙의 권력을 포기하는 것이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지방 정치권력이나 관료집단에 대한 사회적인 신뢰가 적어도 중앙권력과 집단에 대한 정도로 성숙되어야 가능해질 것이다.

4. 수시과제 4 :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운영을 위한 법제개선방안

▣ 연구책임자

홍종현 초청연구원 (법제분석지원실)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회보험의 의의 및 중요성

○ 현대 사회에서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생존배려의 차원에서 국가에 대한 적극적 급부청구권인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헌법 제34조)가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됨.

○ 이는 단지 프로그램 규정 또는 국가목적 규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국가에 대하여 일정한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구체적 권리성을 갖는다는 의미에서 복지재원의 마련이 현대 행정국가의 중요한 과제가 되었음

□ 2011년부터 사회보험 징수통합(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따른 가입자들이 납입한 기여금에 대한 재산권적 보호에 대한 문제의식 제고

○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중첩에 따른 재정법적 문제 증가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선행연구	1	• 전광석,『한국사회보장법론』, 집현재, 2012.	• 문헌조사 • 개괄적인 법령 검토	- 사회보장기본법 - 사회보험법 - 사회보상법 - 공공부조법 - 사회복지관련법 등
	2	• 이준일,『헌법과 사회복지법제』, 세창출판사, 2010.	• 문헌조사 • 헌법이론 및 개별법령 검토	- 사회보장기본법 - 사회보험법 - 사회보상법 - 공공부조법 - 사회복지관련법 등
	3	• 홍완식,『사회보험료 관련 입법에 있어서 헌법원칙의 적용에 관한 연구(현안분석 05-11)』, 한국법제연구원, 2005. 11.	• (독일의 사회보장법제를 중심으로 한) 비교법 연구 • 헌법이론적 연구	- 사회보험료의 개념과 특징 - 사회보험료 부과에 있어서의 헌법원칙의 적용
본 연구		• 기존의 연구는 사회복지법제의 헌법적 기초 내지 일반원리를 개략적으로 서술하고, 개별 법령의 내용을 검토함	- 문헌조사 - 전문가회의 - 해외사례 인터뷰	- 현행 사회복지법제와 복지재정의 연계성 검토 - 해외 사회복지관련 법제와의 비교 분석 - 세대간 형평성을

	• 보험료 수입체계 등에 대한 규범적 기준과 한계에 대한 연구는 독일법이론을 중심으로 수행된 바 있으나 그 운영 및 지출측면에서의 연구는 아직 수행된 바 없음 • 본 연구는 이러한 선행연구와 달리, 개별 법령의 내용과 재정수입과 지출의 연계성에 비중을 두어 복지재정의 공공성, 효율성, 건전성을 확보하는 법제적 개선방안을 검토하는 것에 차별성이 있음 • 또한 여기서 더 나아가 외국법제와의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에 적합한 사회복지재정운영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주요 연구내용

□ 사회보험과 기금

○ 국가재정은 예산과 기금을 포괄하고 있으나, 기금은 예산(일반, 특별회계)와 달리 그 종류도 매우 다양하고, 운영방식도 다르기 때문에 정부는 특정 분야에서의 재정지출을 늘려야 하는 경우에 기금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음

○ 국민연금,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제도의 재정은 일부 국고지원이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가입자의 보험료로 조성되는 기금을 공단이 관리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

○ 현재 우리나라 정부 총예산보다 기금운영 규모가 더욱 크지만, 국민건강보험은 기금도 아니라 공단의 일반회계로 운영되어 국회의 심의 통제의 대상에서 아예 제외되어 있음.

□ 국민건강보험제도의 탄생과 역사적 발전과정

○ 국민건강보험제도의 탄생 및 역사적 발전

○ 국민건강보험재정의 현황 및 문제점 : 의약분업, 재정통합

□ 국민건강보험법제의 현황과 주요 정책과제

○ 국민건강보험의 지속가능한 보장성 강화

○ 부담평등원칙에 입각한 소득 중심의 보험료부과체계 단일화

○ 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보험급여의 결정 및 진료비 지급체계 개선

□ 결론 : 민주적 재정운영을 통한 국민건강보험의 발전

▣ 워크숍 및 전문가회의 개최실적 및 개최계획

1. 제1차 워크숍

(1) 개 요

○ 주제 : 국민건강보험제도의 현황과 주요 쟁점

○ 일시 : 2013. 6. 19(수) 16:00-20:00

○ 장소 : 국민건강보험공단 소회의실(마포)

(2) 세부일정

* 사회: 김지훈 실장 (한국법제연구원 법제분석지원실)

(1) 주제발표 (16:00-17:00) :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주요 현황과 쟁점

- 진상인 주무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2) 토 론 (17:10-18:00)

- 윤기종 박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남북부지사 부장)
- 김준래 변호사 (국민건강보험공단 법률자문위원)

5. 수시과제 5 :

국민연금재정의 지속가능한 관리·운용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 연구책임자

김영미 초청연구원 (법제분석지원실)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국민연금의 재정안정화는 사회보장국가의 실현과 국민의 기본적인 노후소득보장에 직결되는 과제임. 현행 국민연금이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로 운용되기 위해서는 재정수입의 안정과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기금관리·운용체계가 요구됨.

○ 그러나 재정안정화를 위한 보험료율 인상에 대한 사회적 합의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희박함. 이는 국민연금기금의 고갈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과 기금운용에 대한 국민의 신뢰 부족에 기인함.

○ 따라서 국민연금재정확보를 위해서는 보험료율 인상의 대안으로 제기되고 있는 보험료 부과대상소득의 상·하한에 대한 조정과 최저연금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국민연금의 기금운용체계 개선을 위해서는 2000년 이후 여러 차례 개정안이 발의되었음. 그러나 실제 개정은 이루어지지 못했고, 2013년 5월 현재 두 개의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임(김재원 의원안과 김성주 의원안).

○ 김재원 의원안의 주요내용은 국민연금기금을 별도의 운용기관

(국민연금기금운용공사)을 설립하여 운용하는 방식으로 채택함. 특수법인인 공사로 하여금 국가기관으로부터 독립하여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수익성과 안정성을 높이고, 연금재정의 장기적 안정화에 기여하여 연금가입자의 수급권을 보장하고자 함.

○ 김성주 의원안은 국민연금의 사회연대적 성격을 고려하여 가입자 중심의 합의구조를 통해 적정수준의 수익성을 도모하고, 국가의 지급보장책임을 명문화함. 조직개편으로는 기금운용위원회의 정부위원을 축소하고, 가입자 단체의 실질적 대표성을 강화함. 그리고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기금운용의 집행기구로서 국민연금운용본부를 설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 2000년 이후 제기되었던 정부법안과 현재 국회에 상정된 두 개의 법안에 대한 비교검토가 필요함

□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제도적 기반은 1973년에 제정된 「국민복지연금법」에 있음. 이는 일본 후생연금의 영향을 받아 전형적인 독일식 공적연금체제, 즉 사회보험료를 재원으로 하는 사회보험방식의 복지국가체제를 근간으로 함.

○ 국민연금은 소득재분배 기능이 있는 소득비례연금방식의 사회보험제도이며, 재정운용은 기본적으로 (부분)적립방식에 따름.

○ 그러나 제도 도입 초기부터 '저부담 고급여'의 구조를 취하면서 재정불안정의 문제를 안고 있었기 때문에 주로 재정안정화를 중심으로 연금개혁(1998년과 2007년)이 이루어짐.

○ 특히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의 은퇴가 본격적으로 다가옴으로써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불안과 관심이 더욱 증대하고 있고, 최근의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하여 국민연금재정의 확보와 기금운용체계에 대한 제도개선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음.

○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2007년 「국민연금법」개정으로 가입기

간 40년을 기준으로 60%에서 40%로 감소되었음. 보험료율은 상한과 하한의 범위에서 부과대상 소득의 9% 수준으로 유지됨. 국민연금기금은 2012년 9월말 기준으로 약 386조원에 이르고, 그 규모는 세계 4대 연기금의 하나임.

□ 국민연금급여의 하향조정은 모든 수급자의 연금수준을 동일한 비율로 감소시킴으로써 연금수급자의 절반 이상이 최저생계비 이하의 연금을 받게 되는 문제를 야기함.

○ 연금급여의 감소는 사실상 공적연금이 공적부조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모순을 초래함으로써 국민연금이 기초연금의 보장수준에 놓이게 됨. 즉 빈곤예방의 1차적 사회안전망(공적연금)이 2차적 사회안전망(공적부조)에 비해 보장성이 떨어지게 되어 결국 국민연금의 가입탈퇴를 초래하게 됨.

□ 국민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연금재정의 안정화가 요구됨. 이를 위해서 재정수입의 증가, 지출의 제한, 연금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대한 제도개선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

○ 국민연금 재정수입의 확보와 더불어 기금의 운용성과는 재정의 적립방식을 취하는 국민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핵심기능을 담당함. 따라서 기금운용체계의 개선은 국민연금기금의 재정안정화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

□ 따라서 본 연구는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대시키기 위해 국민연금기금운용에 관한 현행 법제를 살펴보고, 지금까지 제기된 문제점과 발의된 개정 법안들을 검토함으로써 향후 바람직한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국민연금의 재정수입을 안정화시키고, 기금운용체계를 개편함으로써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제도에 대한 신뢰를 높임. 이로써 한국형 복지국가체제 실현을 위한 정책적 기반조성에 기여함.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선행연구	1	• 윤석명·김대철·조준행, 인구고령화와 국민연금: 정부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2006): 조세격차 개념을 이용한 정부의 장기예산제약식에 미칠 파급효과를 분석함으로써 재정수지 악화요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연금제도의 개혁할 필요성을 제시함	- 문헌연구 - 재정분석	- 인구고령화와 국민연금과의 관계 - 재정지속가능성의 개념 및 검증 - G-7 국가들의 연금부채 및 조세격차와 비교
	2	• 고경환/윤영진/강병구/김은경/김태은, 복지정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재정정책 (2012): 외국 사례분석을 통해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복	- 문헌연구 - 비교연구 - 정책분석	- 복지국가 유형별 재정구조와 사회경제적 성과 - 복지국가 유형별 복지정책의 지속가능성과 시사점 - 지속가능한 복지를 위한 한국형 재정·조세정책의 모색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지재원 조달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함		
	3	• 장우영, 국민연금제도의 성과와 법적과제 (2011): 국민연금기금운용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국민연금기금의 법적성격을 규명하고 그 지배구조의 개선과제를 제시함	- 문헌연구 - 비교연구	- 국민연금기금의 법적성격 - 외국의 연금기금의 성격과 운용방식 - 기금운용자의 의무와 기금운용원칙 - 국민연금기금의 신탁적 특질과 지배구조

본 연구	• 기존의 연구는 주로 사회복지정책분야의 연구로써 법제현황에 대한 조사·분석이 미흡함 • 본 연구는 정책은 물론 이를 반영한 법제현황을 분석함으로써 법적흠결을 보완하고 향후 실질적인 제도개선의 토대를 마련함	- 문헌연구 - 정책연구	- 사회보험재정으로서의 국민연금기금 - 국민연금재정의 조성과 발전과정 - 국민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 - 국민연금기금의 관리·운용주체와 체계 - 국민연금재정과 기금운용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 주요 연구내용

□ 국민연금에 대한 재정법적 접근

○ 노후소득보장체계에서의 국민연금: 1차적 사회안전망, 기초노령연금과의 관계

○ 국민연금의 재정방식과 기금: (부분)적립방식, 재정수입, 기금규모, 발전과정

-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과 재정안정: 지속가능성의 개념지표, 재정지출

○ 보험료 부과대상소득의 상·하한선 조정

□ 국민연금기금의 관리·운용체계

○ 기금의 관리·운용 주체

○ 기금관리운용위원회

○ 기금관리운용의 원칙과 체계

○ 기금의 운용현황과 한계

□ 중요 개정 법률안에 대한 검토

○ 2000년 이후 제기된 국민연금기금운용에 대한 개정안을 중심으로 살펴봄.

○ 정부는 2001년, 2003년, 2007년, 2008년에 법안을 제출한 바 있음.

○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률안으로는 김재원 의원안(2012.7.10. 발의)과 김성주 의원안(2012.11.27. 발의)이 있음.

□ 국민연금재정과 기금운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문제점

- 국민연금재정: 재정안정화 장치의 부재, 보험료율 인상에 대한 저항, 재정고갈에 대한 지급보장과 신뢰부재 등

- 국민연금기금 관리·운용체계: 기금운용기관의 대표성, 기금운용상의 투명성, 기금의 복지사업에의 투자 등

○ 개선방안

-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의 상한의 상향조정, 최저연금제 도입
- 기금운용위원회의 개편, 기금의 사회복지부분에의 투자확대

▣ 연구요약

□ 최근 국민연금기금의 관리·운용체계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전문성의 부족, 독립성의 미확보, 소극적이고 보수적인 기금운용의 문제와 기금운용위원회의 대표성 확보 및 유지의 문제가 상충되고 있음.

□ 국민연금제도의 도입 이후 수차례 기금관리·운용체계에 대한 개혁논의가 있었으나 1998년 개정 이후 지금까지 개편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지금까지 제시된 정부법안 및 의원법안들에 대한 종합적인 비교분석을 통해 보다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본 연구는 국민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대시키기 위해 국민연금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현행 법제와 2000년 이후 제시된 정부안과 2012년에 제출된 개혁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지금까지 제기된 문제점과 개정 법안들의 쟁점사항을 검토함으로써 향후 국민연금기금의 바람직한 관리·운용체계를 위한 법제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본문의 내용은 우선, 국민연금은 1차 사회안전망을 구성하며, 기초노령연금제도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본적 노후소득보장제도로서의 공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제시함. 이에 따르

면, 사회보험자산으로서의 국민연금기금은 국가재정의 한 형태를 이루며, 노후세대의 부양이라는 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리·운용되어야 함.

□ 국민연금기금의 관리·운용은 국가재정법과 국민연금법에 근거하여 안정성, 수익성, 공공성을 준수하여야 하며, 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에 따라 추가로 유동성과 독립성이 요구됨.

○ 기금운용의 5대 기본원칙은 상호 조화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기금운용자는 수탁자로서 연금가입자 및 수급자와 신인관계에 있음. 이에 대하여 선관주의의무를 영미법상의 '신중인의무'와 유사한 수준으로 볼 때, 보다 적극적인 기금운용을 위하여 '신중투자자원칙'의 수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국민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하여 재정안정화와 더불어 기금관리·운용체계의 개편이 중요함. 이는 주로 수익률 제고를 위한 기관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그러나 지속가능성이란 측면에서 국민연금제도가 '세대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발전하여야 함. 즉 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하여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세대간 형평성'을 고려한 객관적인 심사나 분석이 요구됨.

□ 국민연금기금은 1998년 1월부터 시행된 국민연금제도와 더불어 설치되었고,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해 기금운용위원회를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 둠.

○ 현재 기금의 관리·운용상 최고의 관건은 기금운용위원회의 독립성 보장과 전문성의 강화임. 그러나 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구성에 있어서 대표성 확보의 문제와 전문가로만 구성할 경우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의 문제가 상충됨.

○ 2000년 이후 제기된 개정법안들은 주로 기금운용위원회의 상설

화와 전문성 제고, 국민연금공단의 기금운용본부의 독립 및 공사화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음.

□ 현행 기금관리·운용체계에 대해서는 먼저, 의사결정체계에서 기금운용위원회의 비상설화로 인한 업무의 비효율성과 보건복지부의 관여가 문제됨.

○ 제도와 기금의 통합운영과 관련하여서는 기금운용본부의 비효율적 운영과 관리·감독기관의 비전문성과 비효율성이 문제됨.

□ 기금관리·운용체계의 중점적 개선방향은 현행 기금운용위원회를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소위원회체제로 개편하는 것임. 이러한 소위원회 체계로의 전환은 기금운용위원회의 실질적인 역할과 기능을 강화시킬 수 있음.

□ 보건복지부의 역할은 기금운용을 위한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전문성을 보강함으로써 향상시킬 수 있음.

□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의 문제는 국민연금공단 내 조직체계의 개선을 통해 중간적인 이행과정을 거쳐 시행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국민연금제도와 기금의 유기적인 연계를 위하여 기금운용본부를 국민연금공단에 계속 존치시키되 그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연금법」에 설치근거를 명시할 필요가 있음.

□ 사회적 합의기구로서 '국가공론위원회'가 설립될 경우,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제도 개편과 견해 대립이 심각한 사안에 대하여 국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제도 개혁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임.

6. 수시과제 6 :

지방보조금 법제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 연구책임자

김지영 부연구위원 (법제분석지원실)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최근 언론을 통해 보조금의 부정수급과 부정지급에 관한 다양한 기사를 접할 수 있음.

그 가운데 사인이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하는 보조금의 부정수급의 문제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중앙관서의 장 등이 자신의 이익과 목적에 따라 보조금을 부당 지급하는 경우 등이 다수 발생함.

○ 현재 국가에 의한 보조금 지급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보조금의 지급주체가 국가인 경우에 보조금 지급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보조금 지급의 근거 규정은 “지방자치법” 제17조와 동법 제17조의 2 및 제23조에 근거를 두고 있음.

이와는 별도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민간단체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의 지급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근거를 두고 있음.

○ 보조금의 지급 주체별로 이루어진 상술하는 세 개의 법률 이외에도 국고보조금의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54조에 국고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고, 지방보조금의 경우에는 자치단체별로 “보조금 관리 조례” 등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음.

□ 최근 국가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목적으로 국가세수에 대한 관심의 증대와 국가세출의 통제에 근거하여 “국고보조금”의 경우에는 다양한 논의 사항이 전개되고 있음. 특히 국고보조금의 경우에는 성과주의 측면에서 보조금을 관리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뚜렷이 포착됨. 그러나 “지방보조금”의 경우에는 법상의 개념 정의는 현재 찾을 수 없고, 법적 체계화가 미비한 실정임.

○ 국민권익위원회의 2012년 11월 29일 보도자료를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민간보조금 즉, 지방보조금의 경우 투명성과 공개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동보고서에서는 첫째, 보조사업자의 지정 등에 있어서 공정성이 담보되는 제도적 절차가 구비되어 있지 않고, 둘째, 보조금 지급 단체에 대한 이력관리 등의 미비로 유사·중복사업에 보조금이 지급되며, 셋째, 집행과정에 있어서의 투명성 절차가 미비하며, 넷째, 보조금의 부당사용 시의 환수 등의 절차가 임의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실효성 확보 수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하고 있음.

○ 법상 개념 정의 미비의 문제와 구체적인 실효성 확보 수단이 시급한 문제로 지적됨.

□ 그러나 지금까지 “지방보조금”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만이 진행되어 있고, 법제도적인 측면에서의 연구 성과는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이와 함께 최근 입법 예고된 “지방재정법개정안”은 권익위원회의 권고대로 제32조의2 이하에서 지방자치단체 민간보조사업의 지원 원칙, 실적보고, 평가, 공시에 대한 규정을 두고, 보조금 관련 위원회 규정(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및 주민공시 등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국고보조금에 준하는 여러 가지 통제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보조금에 관한 다양한 법적 문제는 상존

하는 것으로 보임. 지방자치단체 등이 보조금 지급에 관한 통제를 이유로 민간단체 및 사인에게 과도한 개입을 하는 것은 아닌지, 지방보조금의 경우 지방의회에 의한 통제 절차를 거치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지방보조금심의원회에서 이를 결정하는 것에 대한 문제와 보조금지급형식에 있어서 “협약”등의 형식이 가능한 지 여부, 보조금 지급에 따른 “공공조달”의 영역이나 “민간위탁” 영역과의 관계의 불명확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지방보조금 관련 쟁점들 중, 지방보조금의 법적 정의, 절차적 통제 방안, 민간단체의 자율성의 문제와 보조금협약 등에 관하여 프랑스의 사례를 중심으로 우리 법제와 비교법적 관점에서 고찰함으로써 우리 법제로의 시사점을 찾고자 함.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선행연구	1	-과제명: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제도의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자(년도): 이현우, 경기개발연구원(2010) -연구목적: 경기도 31개 시군의 보조금 사업의 실태 분석 후 보조금 제도	-문헌연구 -실증적 연구 -법정책학적 접근	-보조금신청제도와 예산편성시 사전심사제도 연계성의 미흡 -보조금 사업이 신청주의 임에도 불구하고 중앙 부처의 예산확보후 일률적인 보조금 배분의 문제 -매칭펀드 형태의 보조금지급사업의 경우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를 단계별로 고찰하고 보조금의 제도적 측면에서의 문제점과 운영적 측면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음. 제도적 측면에서는 보조금 사업계획이 지방예산 편성시에 충분히 반영되어야 하고, 보조금 교부신청 및 결정 단계에서 보조금 배분방식 및 운영체계의 개선, 보조율의 체계개선, 보조금에 관한 컨트롤 타워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운영적 측면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및 환경을 고려한 보조금사업의 기준보조율 및 편성보조율 조정,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 대한 지원과 사업주체의 재정여건 등이 반영되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		지방재정력에 따른 보조금 사업의 효과상이 -국가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보조금사업을 총괄하여 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의 필요성 제기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간의 수평적 보조금 제도도 도입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2	-과제명: 국고보조사업 평가제도의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 -연구자(년도): 김정훈・공동성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12) -연구목적: 국고보조금 운용평가가 재정사업 평가제도의 한축으로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 국고보조금사업의 운용평가제도가 재정자율평가제도와 유사한 측면이 있어 평가기준이 중복되는 점을 개선해야 하고, 보조금자체에 대한 평가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또한 보조금 운용평가 발	-법제조사 -문헌조사 -비교법적 조사	-국고보조금 체계 및 운용현황 연구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의 특징 국고보조사업 평가제도에 대한 메타평가 수행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제도의 발전방안 제시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전에 있어서 미국의 사례를 분석하여 보조금 운용평가제도의 정체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실무상으로 보조금의 평가준비와 평가진행방식의 운용에 대하여 실무교육과 평가편람을 제시하여 관계 공무원과 보조사업자들에게 보조금제도의 성과평가제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필요성도출을 목적으로 한다.		
	3	-과제명: 국고보조금 및 매칭펀드제도 개선방안 -연구자(년도): 권오성(한국행정연구원)(2005) -연구목적: 선행연구는 국고보조금사업의 재분류를 위하여 국고보조금사업의 근거법령에	-문헌연구 -비교법적 분석 -법정책적 분석 -설문조사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이론적 논의 -선진국의 지방재정제도 분석 -국고보조금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국고보조금에서의 매칭펀드사업의 실효성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의한 사무구분과 지방공무원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한 사업의 외부효과 측정결과에 따른 국고보조금사업의 재분류를 시도하였다. 기준보조율의 객관적 재조명을 통해 기준보조율의 단계를 단순화하고 있다. 또한 실무적으로 혼용되고 있는 매칭펀드제도의 정의와 지방비 대응을 요구하는 사업의 현황 및 이에 대한 매칭비율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	-기존의 연구 현황을 살펴보면, 국고보조금에 관한 법체계적 분석과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 국고보조금의 관리에 있어서 효율성이 강조되고 있음. 그러나 국고보조금 내에서도 지	-본 연구는 지방보조금에 관한 국내의 관련 문헌을 검토하고, 현재 파악되는 문제점을 도출함. -프랑스의 사례를 중심으로 지방보조금을 비교법적으로 접근. -아울러 관련 법령의	-지방보조금 제도의 법적 정의 -지방보조금 관련 법령의 체계 분석 및 문제점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지방보조금”에 관한 조항의 문제점 분석

	방재정조정제도의 일환으로서의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과 보조사업자에 지급하는 보조금의 성질이 다름에도 동일한 법률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양자를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등의 문제는 상존하고 있음. -본 연구는 더 이상 국민이 행정의 객체로서 ‘피치자’의 입장에 놓여 있지 않고, 행정청과 함께 일정한 공익적 목적을 협력하여 달성하는 ‘협력자’로서 인정된다면, 보조금을 통한 행정목적 달성의 형식이 증대될 것을 예상하여 가장 밀접한 거리에서 이루어지는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혹은 사적 주체간의 보조금지급관계인 “지방보조금”에 대한 법제도적 측면에서의 개	제·개정시 시사점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법정책적 접근을 수행함.	

	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주요 연구내용

□ 지방보조금의 정의와 법적 성질

- 국고보조금에 대응하는 지방보조금의 정의
- 보조금에 관한 법적 성질 고찰(사법상 증여설, 공법상 계약설, 쌍방적 행정행위설)

□ 지방보조금법제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

○ 현행 보조금 법제의 체계 분석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국가재정법과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관리조례
- 개별법상의 보조금 근거

○ 지방보조금법제의 문제점 파악

- 보조금지급의 근거 미비
- 보조금 집행에 대한 상시적인 통제 미흡
- 보조사업자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방안 미흡
- 보조금 지급의 예산적 근거와 보조사업자 지정 간에 정합성 문제

○ 보조금의 적정사용을 위한 통제방안

- 사전적 통제 절차
- 사후적 통제 절차

□ 프랑스의 지방보조금 법제의 현황 및 시사점

○ 프랑스의 지방보조금 관련 법제 조사·분석 및 우리나라와의 비교

○ “보조금지급협약”의 시사점

□ 지방보조금의 법적 정의 명확화와 실효적 통제수단 확보 방안

○ 입법예고된 지방재정법상의 보조금 관련 규정에 대한 개선방안 제시

○ 지방보조금의 절차 개선과 이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

- 연구기간 : 2개월(2013. 10. ~ 11. 31.)

	10	11
연구진 구성		
착수심의		
자료조사/분석		
보고서 작성		
워크숍(전체)		
최종심의		

▣ 연구추진방법

□ 국내외 관련 자료에 의한 문헌연구

□ 법제분석지원신청기관 담당공무원, 관련분야 연구자, 전문가 등과의 협력회의 및 자문

□ 주요 쟁점 정리와 연구의 질 제고를 위한 워크숍 및 전문가회의 개최

▣ 주요목차(참고)

제 1 장 서 론

제 2 장 보조금의 법적 체계와 현황

제 1 절 보조금의 일반 체계

제 2 절 지방보조금의 정의와 법적 성질
제 3 절 지방보조금의 법적 체계

제 3 장 우리나라 지방보조금제도의 문제점 - 프랑스보조금법제 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제 4 장 지방보조금의 명확화와 실효성 확보방안
제 5 장 결 론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정책수요처(정부, 기관 등)
안전행정부, 기획재정부, 지방자치단체

▣ 기대효과

□ 지방보조금 관련 법제에 개선방향을 법정책적 관점에서 제시함으로써, 향후 관련 정책 결정에 기여
□ 실제의 분쟁사례 분석 및 그에 대한 법리적 검토에 기초하여, 지방보조금체계의 개선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보조금에 있어서 투명성과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

이슈페이퍼

1. 이슈페이퍼 1 :

일본의 재정개혁 법제에 대한 최근의 동향

▣ 연구책임자

미즈시마 레오 초청연구원 (법제분석지원실)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한국의 18대 대통령선거에서 ‘경제 민주화’, ‘고용 창출’과 함께 ‘복지에 확대’가 논의가 되었으며, 특히 복지확대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규모의 예산확보가 요청됨.

□ 일본 또한 사회복지서비스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1995년 이후 심각한 재정 적자에 직면하였으며 적자규모도 해마다 커지고 있음.

□ 이와 같은 문제상황에 대응하여 1995년 무라야마 정부시대에는 ‘재정위기 선언’이 선포되었으며, 재정구조개혁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음. 그 결과 1997년에는 재정구조개혁법이 시행됨.

□ 그러나 1998년 오부치 정부시대에는 재정개혁보다도 경기회복을 우선하였기 때문에 재정구조개혁법을 일시 동결함. 고이즈미 정부시대 직전까지 재정 적자는 계속 증가하였음.

□ 2001년 이후 고이즈미 정부 시대에는 국고보조부담금, 지방교부세, 그리고 세원이양을 개혁하는 삼의일체의 개혁이 시행되었으나, 각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반대도 개혁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음.

□ 2009년에 민주당으로 정권교체가 이루어졌으나 자민당 정부시대부터 누적된 재정적자가 이미 심각한 상황이었으며, 게다가 2011년 3월에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 복구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정권교체 이전에 내세웠던 '소비세 증세 반대'에 대해서도 재검토하게 되었음.

□ 2012년 자민당으로 다시 정권이 교체되고, 현재 아베 정부는 '아베노믹스'를 내세우며 재정적자 규모축소노력보다는 경기회복을 더 우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결론적으로 일본은 재정적자에 대한 위기의식은 가지고 있지만 매 정권마다 재정적자 규모축소를 위한 노력보다는 경기회복을 우선시하였기 때문에 문제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음.

▣ 주요 연구내용

□ 1990년대 이후의 일본 재정적자
□ 고이즈미 정부시대 이후에 시행된 삼위일체 개혁 검토
□ 민주당 정부시대의 사회보장과 세금의 일체개혁
□ 2012년 자민당 정부교체 이후의 전망

2. 이슈페이퍼 2 :

예산순기의 변화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연구책임자

홍종현 초청연구원 (법제분석지원실)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18대 국회 회기가 종료하고 19대 국회로 넘어오는 과정(2012~2013년)에서 국회법과 국가재정법 등이 순차적으로 개정되면서 국가재정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법제정비가 이뤄졌음.

□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변화는 국가재정법에서 정부의 예산안 제출시한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으로 단계적으로 앞당기고, 그 만큼 국회의 예산심의기간을 연장하며, 만약 11월 30일까지 위원회 심의를 마치지 못하면 자동적으로 본회의에 부의·상정하여 12월 2일까지 예산안을 의결한다는 국회법의 개정내용임.

□ 명시적인 헌법규범에 위배되는 내용의 법률규정은 위헌의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법적 규율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정당성을 소명하여야 하는 책임 내지 의무(Darlegungspflicht)는 그 규정을 마련한 국가기관이 스스로 입증부담을 지게 된다는 점과 아울러 그 동안 국회의 예산처리과정에서 보인 실무관행(헌법상 규정된 예산처리기한 미준수, 쪽지예산 등)을 고려해 본다면 예산심의기간을 연장한다고 하여 과연 충실한 예산심의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하는 우려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음.

□ 국가재정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내지 결정권은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이고 유권적인 해석기관이므로 이에 대한 판단은 일단 유보한다 하더라도, 만약 국가재정법 개정 이후에도 국회의 예산안심의가 정파간의 갈등이나 대립 때문에 부실하게 이루어진다면, 그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은 더욱 가혹하게 이뤄질 것으로 예측할 수 있음.

▣ 연구목적

□ 국가재정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및 국회법 제85조의3 개정시 부대의견에서 제시된 조건의 충족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

□ 예산심의기간을 둘러싼 국회와 정부의 재정권한의 합리적 균형관계 모색

▣ 주요 연구내용

□ 현행법상 예산순기의 체계적 분석

○ 예산순기에 대한 법적 규율의 의의

○ 국가재정법 및 국회법 등 개정에 따른 정부의 예산편성구조 변화

○ 국회의 운영일정과 예산순기의 관계

□ 헌법 제54조와 국가재정법의 불일치 문제

○ 위헌론과 합헌론의 내용과 주요 논거

○ 국회 예산심의·의결절차를 둘러싼 정치적 논란과 비판적 여론

□ 국가재정법에 대한 사법적 심사가능성

○ 국가재정법의 특수성과 우리나라 사법심사의 구조

○ 법률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의 의의와 기능

○ 국가재정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의 가능성과 한계

□ 국회법 제85조의3(자동부의조항)에 대한 헌법적 평가

○ 국회법(소위 국회선진화법)의 개정 및 자동부의 조항의 도입배경

○ 자동부의조항이 실제 적용될 경우에 예측되는 문제점

○ 국가재정법을 개정한 것이 자동부의조항을 도입할 때 국회에서 채택한 부대의견을 충족시키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

□ 결론 :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예산순기의 조정

공동학술대회 개최 실적

< 재정법제연구 워크숍 개최 실적 >

1. “실질적 지역복지의 실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공동학술대회

1) 개 요

○ 행사명 : 한국법제연구원-한국지방자치법학회 공동학술대회
○ 주 제 : 실질적 지역복지의 실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일 시 : 2013년 7월 11일(목) 13:30~18:30
○ 장 소 :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모의법정
○ 주 최 :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 세부일정

[개회식] 13:20~13:30
- 사 회 : 최봉석 교수(동국대학교, 본회 총무이사)
- 개회사 : 이일세 교수(강원대학교, 본회 회장)
- 축 사 : 전재경 선임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원장직무대행)
- 환영사 : 김상겸 교수(동국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제1세션] 13:30~14:50
- 사 회 : 김 재 광 교수(선문대학교)

□ 주제 1 : 복지사무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 발 표 : 조성규 교수(전북대)
- 토 론 : 박재윤 교수(충북대), 최승필 교수(한국외대)

□ 주제 2 :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사무에 대한 국가의 관여
- 발 표 : 홍종현 초청연구원(한국법제연구원)

- 토 론 : 양승미 교수(동양대), 최봉석 교수(동국대)

[제2세션] 15:05~16:25

- 사 회 : 강 재 규 교수(인제대)

□ 주제 3 : 복지사무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분담

- 발 표 : 김상태 교수(순천향대)
- 토 론 : 윤현석 교수(원광대), 최 유 부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 주제 4 : 복지사무와 관련된 자치입법권의 현황 및 문제점

- 발 표 : 강기홍 교수(경상대)
- 토 론 : 최철호 교수(청주대), 김지영 부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제3세션] 17:20~18:00

- 사 회 : 김 병 기 교수(중앙대)

□ 주제 5 : 다문화가정 지원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 발 표 : 김성배 교수(국민대)
- 토 론 : 장경원 교수(서울시립대), 방동희 교수(경성대)

□ 주제 6 : 사회복지수급권의 현대적 쟁점

- 발 표 : 이호용 교수(한양대)
- 토 론 : 이현수 교수(건국대), 이관행 박사(강원대)

[종합토론] 18:00~18:30

- 사 회 : 김 중 권 교수(중앙대)

[폐회] 18:30~

2. “2013 재정법제의 최근 이슈”, 한국재정법학회・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와 공동학술대회

1) 개 요

○ 주제 : 2013 재정법제의 최근 이슈
○ 일시 : 2013년 10월 1일(화) 14:00 ~ 18:00
○ 장소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관 조명덕홀 801호실
○ 주최 :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재정법학회,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 세부 사항

- 제1부 사회 : 김해룡 교수 (한국외국어대학교 부총장)

[발표주제 1] 지방자치단체의 이전재원에 관한 연구
- 발표자 : 최유 박사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토론자 : 최승필 교수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수연 박사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발표주제 2] 건강보험재정 법제개선방안
- 발표자 : 홍종현 (한국법제연구원 초청연구원)
- 토론자 : 신영수 교수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장희 박사 (헌법재판연구원)

- 제2부 사회 : 김지훈 박사 (한국법제연구원 법제분석지원실 실장)

[발표주제 3] 재정헌법의 현안
- 발표자 : 장용근 교수 (홍익대학교 법학과)
- 토론자 : 김종면 박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분석센터 센터장)
김지영 박사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발표주제 4] 금융위기 이후 유럽금융감독체제재편에 관한 고찰

- 발표자 : 길준규 교수 (아주대하교 법학전문대학원)
- 토론자 : 권배근 교수 (광운대학교 법학과)
  안수현 교수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발표주제 5] 국민연그관리공단 재정의 지속가능성

- 발표자 : 양기진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토론자 : 원종현 박사 (국회입법조사처 산업경제조사실 금융외환팀)
  김영미 박사 (한국법제연구원 초청연구원)

[종합토론] 참가자 전원

3. “국가와 계약”, 행정법이론실무학회 공동학술회의

1) 개 요

○ 주제 : 국가와 계약
○ 일시 : 2013년 10월 12일(토) 14:30-18:50
○ 장소 : 혜송도서관 지하1층 B101호
○ 공동주최 : 한국법제연구원・행정법이론실무학회

2) 세부 사항

일 시	발 표 및 내 용
14:10-14:30	등 록
14:30-14:40	“국가와 계약” ▷ 개회사 : 김병기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회장 ▷ 축 사 : 이 원 한국법제연구원 원장
14:40-16:00	제1부: 규제와 계약 ▷ 사 회 : 백윤기 (아주대학교 교수) 주제 1. 계약방식을 통한 규제 - 영국의 공공계약을 중심으로 ▷ 발 표 : 이희정 (고려대학교 교수) ▷ 토 론 : 이유봉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주제 2. 프랑스 보조금 제도의 법적 문제 -보조금 협약의 도입가능성 ▷ 발 표 : 김지영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토 론 : 박현정 (한양대학교 교수)
16:00~16:15	Coffee Break
16:15-17:35	제2부: 계약과 주체 ▷ 사 회 : 이은기 (서강대학교 교수)

	주제 3. 공기업과 계약 ▷ 발 표 : 송시강 (홍익대학교 교수) ▷ 토 론 : 차민식 (부산항만공사 부사장) 주제 4. 행정계약의 제3자의 지위 - 계약외 제3자에 의한 행정소송의 제기가능성 ▷ 발 표 : 강지은 (대법원 재판연구관) ▷ 토 론 : 안동인 (영남대학교 교수)
17:35-17:50	Coffee Break
17:50-18:50	종합토론 ▷ 사 회 : 우성기 (동국대학교 교수) ▷ 토 론 : 김용섭 (전북대학교 교수) ▷ 토 론 : 김지훈 (한국법제연구원 법제분석실장) ▷ 토 론 : 김종보 (서울대학교 교수) ▷ 토 론 : 조성규 (전북대학교 교수)
19:00~	폐회사와 저녁만찬

4. 특별워크숍 : “재정법제연구사업 10년차 성과발표회 - 재정법제의 현재와 미래”

1) 개 요

○ 일시 : 2014년 12월 6일 화요일 오후 4시부터 6시
○ 장소 : 양재동 엘타워 데이지룸

2) 외부 참석

강주영 (제주대 법전원 교수) / 곽관훈 (선문대 법학과 교수)
표명환 (제주대 법전원 교수) / 신영수 (경북대학교 법전원 교수)

3) 워크숍 내용

- 10년 동안의 재정법제연구사업 개요
- 주세별 성과와 과제
  국가재정 / 지방재정 / 사회보장재정 등
- 재정법연구의 미래와 연구비전에 관한 종합토론

워크숍 개최 실적

< 재정법제연구 워크숍 개최 실적 >

○ 정책수시과제 등 관련 워크숍 개최(5회)

일 자	주 제	발 표	토 론
2013. 1. 10.	**재정법제연구사업 2014년 과제개발 전문가회의**	곽관훈 교수 (선문대학교) 김대인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김명식 (조선대학교) 김영록 박사 (한국행정연구원) 나아정 입법조사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동수 교수 (대구가톨릭대학교) 장선희 교수 (대구가톨릭대학교) 최철호 교수 (청주대학교) 임언선 박사 (국회입법조사처) 김도승 법제분석실 실장 이유봉 부연구위원 김지영 부연구위원 최유 부연구위원 홍종현 초청연구원	
4.26	**수시과제 "영국의 중앙과 지방간 사회복지재정배분제도연구"의 워크숍**	김보영 교수 (영남대학교)	김현아 (한국조세연구원) 이채정 (국회예산정책처)

일 자	주 제	발 표	토 론
			최유 부연구위원 김지영 부연구위원 미즈시마레오 초청연구원 김영미 초청연구원 홍종현 초청연구원
6.19	**수시과제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운영을 위한 법제개선방안"의 워크숍**	홍종현 박사 (한국법제연구원)	윤기종 박사(국민건강보험) 김준래 변호사(국민건강보험) 이유봉 부연구위원 김지영 부연구위원 최유 부연구위원 미즈시마레오 초청연구원 김영미 초청연구원
8.7	**수시과제 "국민연금재정의 지속가능한 관리·운용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의 제1차 워크숍**	윤석진 교수 (강남대학교 법학과) 배건이 박사 (한국법제연구원)	김영진 부연구위원 최 유 부연구위원 이유봉 부연구위원 김지영 부연구위원 권순현 초청연구원 조용혁 초청연구원 김영미 초청연구원 미즈시마 레오 초청연구원
8.13	**수시과제 "국민연금재정의 지속가능한 관리·운용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의 제2차 워크숍**	원종욱 박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정우 교수 (인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최 유 부연구위원 이유봉 부연구위원 김지영 부연구위원 김영미 초청연구원 홍종현 초청연구원 조용혁 초청연구원